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성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614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문성호 의원(1명)

찬 성 자: 고광민, 김규남, 김길영,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이성배,
이원형, 장태용, 정준호,
최민규, 허 훈 의원(17
명)

1. 제안이유

- 최근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에 따라 국제경기 진행이 어렵고, 이를 이용하는 선수들의 부상을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할 것임.
- 이에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체육시설을 포함한 대행사업 시설물들에 대해 안전한 환경과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사장 관련(안 제8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 구조문표 대비표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이사장은 체육시설 등을 포함하는 대행사업 관리·운영에 있어 안전한 환경과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이사장) ①・② (생 략)	제8조(이사장) ①・② (현행과 같 음)
<u><신 설></u>	<u>③ 이사장은 체육시설 등을 포 함하는 대행사업 관리・운영에 있어 안전한 환경과 질높은 서 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 다.</u>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이사장)제3항 “이사장은 체육시설 등을 포함하는 대행사업 관리·운영에 있어 안전한 환경과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